

**정신건강복지법 관련
지자체 안내사항**

2017. 5.

1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보호의무자인 입원 등 관련

- 법 시행 이후 환자 또는 시설 입소자가 입원 등의 의사(자의, 동의)가 있거나,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 자의·동의·보호입원 등으로 신속히 전환(1개월 이내)하여야 합니다.
- 환자 또는 시설입소자가 자·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행정입원으로 신속히 전환하여야 합니다. 행정입원으로서의 전환이 예상되는 환자 또는 시설입소자가 있는 병원 또는 정신요양시설을 확인하여 주시고, 행정입원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구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.
- 해당 환자 또는 시설입소자가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입원 중인 경우, 행정입원이 가능한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. 지정정신의료기관 현황은 국립정신병원 홈페이지*에 게재됩니다.

* 국립정신건강센터(www.ncmh.go.kr)

- ◆ 지정정신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가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경우, 지자체장이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진단입원을 의뢰하여 행정입원 절차를 진행합니다.
- ◆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입원 중인 환자, 시설 입소자가 행정입원으로 전환하는 경우, 지자체장이 환자가 입원할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진단입원을 의뢰하고 정신질환자를 해당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합니다.
- ◆ 행정입원을 위해 환자 이송 시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에게 호송을 위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2.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한 입원(행정입원) 관련

- 지정정신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행정입원 중인 환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해야 합니다.
-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병원에 행정입원 중인 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 주시고, 법 시행 후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이송이 필요한 사실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3. 정신건강심사위원회 관련

- 법 시행 이후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, 신속히 진행하여 6월 연장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. 또한 6월과 7월에 개최되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연장심사 요청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니 준비를 부탁드립니다.
- 법 부칙 제18조에 따라 법 시행 전 심사청구된 사항은 개정규정에 따라 심사청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.
- 법 시행 전 최초 입원하여 3개월이 경과한 환자(2.27일 이전 입원)는 법 시행 후 1개월 내 퇴원 혹은 연장심사 청구하여야 합니다.
 - 2.28일부터 5.29일까지 연장심사를 받은 환자 역시 6.29일까지 연장심사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. 다만 5.30 전 연장심사 청구하여 6월 연장심사가 이뤄지는 환자는 기존에 제출된 서류를 개정규정에 의해 제출된 서류로 간주하며, 6.29일까지 연장심사 청구를 한 것으로 봅니다.

- 심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명령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하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. 법 시행 초기 심사청구가 급증하는 상황 등이 이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합니다.

4. 지정진단의료기관 관련

- 전문의가 부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이후 국·공립 및 지정진단의료기관에 한해 같은 의료기관 2인의 진단으로 전환신청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규정하였습니다. 추후 지정진단 의료기관으로 추가신청이 예상되오니, 지정 관련 협조 부탁드립니다.